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병역 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부담 치료대상자에 대한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58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후,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등으로의 파견을 제한하여 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잔여 복무 대상자 관련 조문 정비(안 제66조, 제68조의19, 및 제70조)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무 중단 등이 된 경우로서 잔여복무 대상여부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자 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예술·체육요원 등의 복무기간 산정 등 후속 조치(안 제68조의19 및 제92조)

1) 예술·체육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잔여 복무기간 산출을 규정하는 조문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서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 잔여복무기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 의무화 후속조치(안 제87조)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후,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등으로의 파견을 제한하여 박사학위 취득

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기준 마련
(안 제129조의2)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수행 보장을 위해 재임 중인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형자 병역처분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6조)

징역형 금고유예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7조)의 형기를 합산하여 수형사유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국가부담 치료 대상 구체화 및 근거 명문화(안 제153조)

국가부담 치료 대상에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을 추가하고, 병역판정검사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현행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동일하게 보상하여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선정 기준 정비(안 제155조의4)

고소득자 관리대상 기준을 현행 ‘최고 세율 적용’에서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 적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예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중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제68조의19제2항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을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으로, “기간으로 하며”를 “복무기간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제3항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3항제2호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8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은 제한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제9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frac{\text{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기 이전까지 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제129조의2제1항 본문 중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장기를 적용한다”를 “장기를 적용하고,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의 경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153조제4항제1호 중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75조제6항제4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제155조의4제1항 중 “최고”를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2, 제153조,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

의19,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생략)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u>집행을 받지 않기로</u> <u>확정된</u>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 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② ----- ----- ----- ----- <u>집행이 면제된</u> ----- ----- ----- -----.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생략)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u>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u> <u>확정된</u>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u>집행 면제된</u> ----- ----- ----- -----.

③ (생략)

④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지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1. 2.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지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이나 사회복지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

---- 복무기간을 말하며,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⑥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② (생략)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생략)

<삭 제>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집행 면제된 -----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단서 신설>

가. ~ 다. (생략)

2. (생략)

③ · ④ (생략)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
소자 처리) ①·② (생략)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② _____

1. -----

다만, 각 목에도 불
구하고 법 제39조제3항제2호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
로 옮겨 복무하는 전문연구요
원의 경우 제85조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로
의 파견은 제한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
소자 처리)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2.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기 이전까지 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기 이전까지 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⑤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3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

 ----- 있다.

 -----.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자빙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

-----.

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제2호에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1. 법 제7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장기를 적용하고,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의 경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

<u><신 설></u> 2. (생 략) ⑤ · ⑥ (생 략)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 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u>최 고</u>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 한다. ② ~ ④ (생 략)	<u>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u> 2. 법 제75조제6항제4호에 따라 <u>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 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 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리 등) ① ----- ----- ----- ----- <u>최 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 로 높은</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8